

# 피고용인에 대한 공고

## 캘리포니아 노동법, 90.2 절

2018년 1월1일 효력 발생에 의거, 연방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, 캘리포니아 노동법 90.2(a)(1) 절 요건에 의해, 고용주는 조사 통보서 수령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, 현재 피고용인들과 고용관련 정보 의사소통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공고문을 게시하여, 이민국이 집행하는 **I-9** 노동자자격검증서 또는 기타 고용관련 기록 관련 모든 조사를 공지해야 합니다.

조사 집행 이민당국 명칭 (적절하다면 하나 이상의 네모에 체크 가능):

- ICE (이민세관단속국)
- DHS (국토안보부)
- USCIS (미연방 이민국)
- 기타: \_\_\_\_\_

고용주가 조사통지서를 받은 날짜: \_\_\_\_\_

조사가 집행될 날짜: \_\_\_\_\_

조사 장소:

고용주의 사업장소 또는 작업장으로서 다음 주소의 장소:

고용주의 사업장소 또는 작업장이 아닌 장소

조사의 내용 (아는 범위에서 해당되는 모든 곳에 체크):

- I-9 양식
- I-9 양식의 입증 서류 (예: 여권, 운전면허증, 사회보장카드, 영주권 카드)
- 급여지급 기록과 데이터 (피고용인 이름, 사회보장번호, 채용 날짜 포함)
- 캘리포니아 분기별 기여환급 및 임금 보고서 (DE9 또는 DE6 양식)
- 분기별 임금 및 근무시간 보고서
- 피고용인에 관한 모든 명단 (이름, 사회보장번호, 생년월일, 채용날짜 등 포함)
- 미스매치 또는 노-매치 관련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사회보장청의 모든 서신
- E-승인 참가 또는 사회보장번호 서비스에 확인용 문서 또는 서신
- 이 밖의 정보 또는 문서 목록 또는 직원이나 그들의 개인 정보 확인 내용 (목록을 간단히 서술하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):

**I-9** 노동자자격검증서 조사 공고문 양식의 사본과,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문서는 이 통지서와 함께 피고용인들에게 게시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.